

##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4
----------	---

제출년월일 : '98. 7. .

제 출 자 : 목 포 시 장

### 1. 개정이유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안정된 위생매립을 기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등 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반입폐기물의 제한(안 제2조, 제11조)

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은 반입을 제한함.

#### 나. 반입수수료의 징수(안 제12조)

현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인 13,220원으로 정함.

#### 다. 수수료 납부방법(안 제14조)

현재 반입수수료를 당일 합산 고지하여 다음날까지 은행에 납부함.

### 3. 개정 조례안 : 별첨

###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2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5. 관계부서의견

- 청소과 : 목포시폐기물관리조례와 부합함.
- 지역경제과 : 반입수수료 물가대책 심의 (톤당 13,220원)

### 6. 예산사항

- 연간 예상수입 : 1억원

### 7.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 '98. 6. 15 ~ 7. 6 (22일간)
- 결 과 : 의견없음

8. 조례.규칙심의위원회 : '98. 7. 9 (원안가결)

9. 기타 참고사항

- 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내역
- 청소 67510-2480('94. 12. 29)호 관련공문 사본

## 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위생매립장(이하“매립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단,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장의 책무) ①목포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매립장안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한다.

②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출입) 소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반입허용) ①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목포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한다.

②소장은 목포시 폐기물 분리수거 시책에 맞추어 요일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는 목포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의 2에 의거 적정처리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 ①시장이 발급하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하“운반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차량이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자 신고필증과 차량등록증을 제시하여 소장으로부터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임시운반증 소지자는 계량카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폐기물 반입 및 반입차량 통제등 매립장 운영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발생 즉시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반증 신규발급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신규·변경허가 또는 말소된 경우

3.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한 경우

4. 기타 소장이 알아야 할 폐기물의 특성, 매립장이용 차량 등에 관한사항

제7조(계량카드 관리) ①폐기물 반입자는 발급된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소장이 발급한 계량카드를 분실·훼손한 차량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8조(출입허용 차량) ①매립장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 폐기물 수집·운반기준에 적합하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계량카드를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립장 조성공사·공무수행 등의 차량은 매립장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반입될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될 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소장은 시에서 통보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반입을 허용한 폐기물의 계량결과를 반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근표”를 발급한다.

제10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입자의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3.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체납한 경우

②소장은 폐기물 반입을 일시중단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일시, 기간, 이유 등을 기재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소장은 폐기물 반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불법폐기물은 반입 증거 확보후 즉시 반출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반출 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반입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규정에 의한 폐기

물반입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1톤당 13,220원을 부과한다.

- ②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 부과하여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
- ③시에서 직접수거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매립장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환경보호단체 및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자연환경보호의 날 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14조(수수료 납입기한 및 징수방법) 수수료는 당일 반입종료시 합산고지 된 분임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사용) 징수된 수수료의 수입은 폐기물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사업
-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
- 3.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세부과징수규칙 및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대집행) ①소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자가 제11조의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